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7
----------	-----------

제출일자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옥내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수관 개량(갱생 및 교체) 공사비 지원
- 각종 행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전부 감면
-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선납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가.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 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안 제6조)
 - 설계 수수료를 급수공사비 산출시 포함시켜 함께 납부토록 함
-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이용시설 수도요금 전부 감면(안 제37조)
- 라. 옥내 노후 급수설비 갱생 및 교체비용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사회복지시설, 단독·공동주택 (100제곱미터 이하), 학교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마.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3조, 제18조, 별표 5)
 - (1)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대상 범위 확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계량기 설치 위치 선정 시 수용가와 협의
 - (3) 급수도용 등 부정행위 사전차단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안 제4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21조·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2천만원 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05. ~ 4.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중 “다음의 3종으로”을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부수한다”을 “따른다”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
2.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 수도요금 100퍼센트 감면

제40조제2항 중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를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5.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 중 “「수도법」 제71조2”를 “「수도법」 제71조”로 한다.

별표 5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p> <p>11.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p>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p> <p>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p> <p>④ ~ ⑤ (생략)</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② ~ ③ (현행 제4항·제5항과 같음)</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⑤ (생략)</p> <p>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 -----.</p>
<p>제18조(상수도의 사용) ① (생략)</p> <p>② 상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8조(상수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⑤ 제4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④ 제3항- ----- ----- ----- -----.</p>
<p>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p> <p>① (생략)</p> <p>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신설></p>	<p>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5.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46조(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46조(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 -- ----- ----- -----.</p>

[별표 5]

과태료 처분기준(제45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u>500,000원</u>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u>500,000원</u>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4.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0원
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7. 정수처분 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8. 급수판매 금지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2항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